

## 중국 · 뉴질랜드 간 FTA 협정 체결결과 및 시사점

김 한 성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hskim@kiep.go.kr, Tel: 3460-1087)

여 지 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jina7@kiep.go.kr, Tel: 3460-1098)

- |                       |                       |
|-----------------------|-----------------------|
| 1. 중 · 뉴질랜드 FTA 추진 경위 | 3. 중 · 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
| 2. 중 · 뉴질랜드 FTA 체결 동기 | 4. 결론 및 시사점           |

### 주요 내용

- ▶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8년 4월 7일 베이징에서 3년에 걸친 15차 협상 끝에 중 · 뉴질랜드 FTA에 서명하였고, 동 FTA는 200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중 · 뉴질랜드 FTA는 중국이 OECD 회원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인 동시에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중국의 기체결 FTA에는 다루지지 않았던 인력이동, 지식재산권, 기술규정의 상호 인정 등이 협정문에 포함되었음.
- ▶ 중국이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경제적 동기는 시장경제지위(MES) 승인유도, 산업경쟁력 제고 등이며, 뉴질랜드는 점증하는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활성화하고자 함.
- ▶ 상품분야 협상에서 중국은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액 기준으로 약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기로 함.
- 그러나 뉴질랜드의 대중 수출액 기준으로 약 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혹은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었음.
- ▶ 중 · 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이 세번변경기준을 수용한 것은 향후 한 · 중 FTA 원산지규정 논의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중국은 FTA 협정에서 자국 서비스 산업의 취약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중 · 뉴질랜드 FTA에서도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FTA에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서비스의 개방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협정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방일정을 개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래치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서비스자유화 극대화에 도달하지 못한 원인이 됨.
- 그러나 미래시점의 최혜국대우 인정은 포함하고 있음.
- ▶ 투자보호는 설립 이후에만 내국민대우(NT)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투자자유화가 아닌 투자보장협정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비합치조치와 래치메커니즘, 국가간 소송제도(ISD) 등 중 · 칠레 FTA의 투자부분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에 합의하였음.
- ▶ 중 · 뉴질랜드 FTA의 인력이동의 경우, 상호적인 양허 이외에 뉴질랜드가 중국에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임시고용을 위한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는 데 합의함.
- ▶ 중 · 뉴질랜드 FTA의 지식재산권(IPR) 조항은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 최초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구체성이 없으며,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심각한 국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실효성면에서는 매우 미진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 ▶ 중 · 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은 최초로 전기전자설비의 기술상호인정(EAEMRA)에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선례를 활용하여 한 · 중 FTA 협상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관련 품목의 대중 수출기업들의 기술인증과 관련한 비용절감과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1. 중·뉴질랜드 FTA 추진경위

■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8년 4월 7일 베이징에서 중·뉴질랜드 FTA에 서명함.

- 동 FTA는 중국이 OECD 회원국인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인 동시에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중국은 홍콩, 마카오 이외에 ASEAN, 칠레, 파키스탄 등 제조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선진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상품협상을 먼저 체결하고 서비스와 투자협상을 유도하는 방식의 낮은 FTA 전략을 고수해 왔음.

○ 그러나 뉴질랜드나 호주 등 선진국과 진행한 FTA 협상에서 파트너 국가가 포괄적인 수준의 FTA 입장을 견지했고, 이번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타결은 중국이 최초로 포괄적인 FTA에 일괄 합의(single undertaking)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4년 5월 무역경제협력기본협정(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을 체결하고 양국간 FTA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4년 10월 공식적으로 FTA 협상을 개시하였음.

○ 2001년 뉴질랜드는 최초로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중국의 호감을 샀고, 2004년 4월에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선진국에서는 최초로 인정하는 등 양국간의 두터운 우호관계가 FTA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음.

- 중·뉴질랜드 FTA는 3년 동안 15차 협상을 거쳐 2007년 12월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00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FTA 협상의 통상적인 전 단계인 FTA 가능성 연구가 2003년 수행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중·뉴질랜드 FTA를 통해 양국의 GDP, 무역 및 복지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 후 10년간 중국의 실질 GDP, 실질소비 및 총생산은 양국간 FTA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각각 0.07, 0.17 및 0.07% 증가하고, 뉴질랜드는 각각 0.25, 0.55 및 0.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양국간 교역에 있어 중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첫 1년에는 10.9%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뉴질랜드의 대중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대부분의 이득은 관세와 불필요한 비관세조치(NTMs)를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며, 이득은 양국 모두에서 농업과 비내구성 제조업 영역을 포함한 전 산업부문에 걸쳐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함.

글상자 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 현재까지 중국은 ASEAN 10개국과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된 홍콩, 마카오와 FTA 협정을 체결하였음.

표 1. 중국의 FTA 진행 현황

단계	국가
발효 및 타결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협상	호주, GCC,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페루
검토	한국, 인도, 남아공

자료: 지만수(2008. 4. 1), 「한·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일, 한·중 FTA 어떻게 볼 것인가」 세미나발표자료.

- 또한 현재 FTA 공식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로는 호주, GCC(걸프협력회의), 그리고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한국, 인도 등이 있음.

- 아직 공동연구 단계까지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SCO(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과도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합의한 바 있음.

-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하는 대신 중국과의 FTA 협상을 먼저 시작한 나라는 뉴질랜드와 호주, 유럽국가로는 아이슬란드, 아프리카 국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음.

## 2. 중·뉴질랜드 FTA 체결동기

■ 2004년 10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뉴질랜드 방문 이후 양국 간에 정식 FTA 협상이 시작되었음.

- 헬렌 클라크(Helen Clark) 뉴질랜드 전 총리는 2005년 5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과의 FTA 조기 협상을 희망하며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선진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힘.

- 협상 진행과정에서 중·호주 FTA 협상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중국과의 FTA 체결에 있어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경쟁적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호주는 2007년 11월 협상에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뉴질랜드가 먼저 타결을 이루게 되었음.

■ 중국의 입장에서 FTA 추진의 동기는 크게 외교안보상의 전략적 측면과 경제적 이익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sup>1)</sup>

- 외교·안보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뉴질랜드 FTA 체결은 중국의 △ 지역 리더십 강화, △ 대미 견제와 차별화 등의 동기가 작용함.

-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동기로는 △ 해외 에너지자원자재 확보, △ 무역마찰 회피(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대(對)서구 우회수출 등), △ MES 승인 유도, △ 산업경쟁력 제고, △ 미국의 통상압력에의 대응, △ 서부대개발 및 동북진흥의 촉진, △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이 있음.

■ 뉴질랜드의 입장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활성화하고 중국 시장에서 뉴질랜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경제적 이유가 FTA 추진의 중요한 요인이 됨.

- 최근 들어 뉴질랜드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뉴질랜드의 대중 수출 평균증가율은 11.2%로 뉴질랜드 전체 수출증가율의 4배 가까이 이르고 있으며, 수입증가율도 16.4%로 전체 평균수입 증가율인 4.5%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1) 이장규 외(2007), 『중국의 FTA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표 2. 뉴질랜드의 대중 무역액과 비중

(단위: 억 NZ 달러)

	'00	'01	'02	'03	'04	'05	'06	'07	연평균 증가율
NZ 전체수출	293	327	310	284	307	308	346	366	3.2%
NZ 대중국 수출	9	13	14	14	17	16	19	20	11.2%
전체 수출비중	3.2	4.1	4.6	4.9	5.7	5.1	5.4	5.4	
중국순위	6	6	5	4	4	4	4	4	
NZ 전체수입	308	317	323	318	349	373	407	419	4.5%
NZ 대중국 수입	19	22	26	28	34	40	50	56	16.4%
% 전체 수입비중	6.3	7.0	8.0	9.0	9.7	10.8	12.2	13.4	
중국순위	4	4	4	4	4	4	2	2	

자료: 중·뉴질랜드 FTA 공식사이트.

- 이처럼 뉴질랜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을 증대하고자 하는 상황임.

- 지금까지 뉴질랜드는 '개방형 국가' 라는 이미지에 맞지 않게 호주를 제외한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FTA 체결에 뒤처져 있었음.

○ 특히 이웃 국가인 동시에 세계시장의 주요 경쟁국인 호주가 미국과 성공적으로 FTA를 체결·발효한 것과는 달리, 미국과의 협상 개시조차 하지 않은 뉴질랜드에게 중국과의 FTA 체결은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됨.

## 3. 중·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 중·뉴질랜드 FTA는 중국이 기체결한 ASEAN, 칠레, 파키스탄과의 FTA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서비스와 투자를 상품협상과 동시에 일괄 합의한 경우는 중·뉴질랜드 FTA가 최초였음.

- 또한 중국의 기체결 FTA에는 다루지지 않았던 인력이동, 지식재산권, 기술규정의 상호인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환경과 노동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함.

표 3. 중국의 기체결 FTA 간의 규율대상 비교

협정(발효연도)	ASEAN (2005)	칠레 (2005)	파키스탄 (2006)	뉴질랜드 (2008)
1. 상품무역 분야	○	○	○	○
최혜국대우	×	×	×	×
내국민대우	○	○	○	○
관세철폐	○	○	○	○
원산지규정	○	○	○	○
관세평가	×	×	×	○
통관절차	×	○	×	○
기술규정의 상호인정	×	×	×	○
위생 및 검역조치	○	○	○	○
세이프가드조치	○	○	○	○
반덤핑상계조치	○	○	○	○
2-1 서비스무역 분야	○	○	×	○
특정 서비스의 규율	○	○	×	○
자연인의 이동	×	×	×	○
2-2. 투자 분야	×	×	○	○
3-1. 지식재산권 분야	×	×	×	○
3-2. 정부조달 분야	×	×	×	×
3-3 기타				
경쟁정책	×	×	×	×
환경	×	○	×	○
노동	×	○	×	○
전자상거래	×	×	×	×
Transparency	×	○	○	○
4. 조직규범 분야				
협정운영조직	○	○	○	○
분쟁해결제도	○	○	○	○

자료: 정인교, 노재봉 편저, 「FTA의 주요내용」,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p.97을 참고하여 각 협정문을 기준으로 필자 작성.

가. 상품분야 관세양허

- 중국은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품 수출액 기준으로 약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중·뉴질랜드 FTA 발효와 동시에 중국의 수입액 기준 약 35.3%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철폐하며, 2009년에 6.0%, 2012~3년에 31.2%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그러나 뉴질랜드의 대중 수출액 기준으로 약 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혹은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었으며 모직물(Wool)과 모직물로 만든 상의(Wool tops)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국 관세할당(Country-specific tariff quota)’을 적용함.

표 4. 중·뉴질랜드 FTA 상품 관세인하/철폐 계획<sup>2)</sup>

관세 철폐시기	중국 상품 양허		뉴질랜드 상품 양허	
	NZ 대중 수출 비중	주요 품목	NZ 대중 수입 비중	주요 품목
2008년 (10월 1일)	35.3%	목재판, 어류사료, 금속스크랩(구리 및 알루미늄), 접결탄 및 철 슬래그	38.6%	37%의 품목은 이미 무관세 적용
2009년	6.0%	현재 울 수출의 약 75%(현 수출이 8년에 걸쳐 무관세가 되도록 균형을 맞춤)		
2012 /13년	31.2%	조제분유, 카세인, 요거트, 냉동어류, 냉동어류필레, 메탄올, 동물유지와 기름, 사과와 와인	35.3%	철, 백자, 플라스틱, 가구, 타이어, 펜
2014년			4.2%	섬유, 일부 의류, 신발과 카펫
2016년	4.6%	식용오일, 오렌지, 오렌지주스, 착유기, 양과 쇠고기, 키위, 양가죽	21.5%	의류와 신발
2017년	2.5%	버터, 치즈 및 액체우유		
2019년	15.2%	전지 및 탈지분유		
울제품 국별관세할당	8.1%	울과 울로 만든 상의		
양허제외	4.0%	일부 종이제품, 가공목제품, 밀, 설탕, 쌀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 96%에 이르는 관세철폐에 포함된 품목에 대하여 뉴질랜드는 지난 2004~06년 기간에 평균 1억 1,850만 달러의 관세를 중국 세관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뉴질랜드는 중·뉴질랜드 FTA로 인해 연간 약 1억 1,550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됨.

나. 민감품목의 처리방식

- 상품협상에 있어서 중국은 자국의 축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을 위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중간심사조치(mid-term review mechanism)를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음.
  - 낙농제품은 뉴질랜드의 대중 수출품 중 18%(연간 3억 6,000만 NZ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으로 조제분유, 카세인, 요거트 및 유장에 대한 관세는 5~6년, 치즈, 버터 및 액체우유는 10년, 전지 및 탈지분유는 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됨.

2)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동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일단 그대로 인용함. 추후에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중국은 뉴질랜드의 일부 낙농제품에 대하여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음.
- o 합의된 제한수량수준(quantity trigger level)을 넘어서는 품목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부가할 수 있음(WTO 관세수준까지 가능).
- o 특별세이프가드는 관세삭감기간 및 철폐 이후 5년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음.
- 또한 전지 및 탈지분유 제품에 대하여 중간심사조치를 포함 시킴으로써 관세삭감 6년차(2013년)에 뉴질랜드산 낙농제품이 중국 낙농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상품 무역위원회가 심사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1년간 동 제품에 대한 관세삭감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모직물(Wool)은 전체 뉴질랜드 대중 수출의 약 8%(연 평균 1억 7,000만 NZ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품으로서 중국은 뉴질랜드산 모직물에 대하여 특정국 관세할당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한편 뉴질랜드에서 중국으로의 전체 수출의 4%에 해당하는 가공목재제품과 종이제품, 가공목재제품, 밀, 설탕, 쌀 등에 대하여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분류하였음.

표 5. 양허제외 품목 분류

품목명	HS 8단위 개수
Ch 10. 곡물	15
Ch 11. 곡물의 분과조분·밀가루·전분	10
Ch 15. 동식물성 유지	19
Ch 17. 당류·설탕 과자	6
Ch 31. 비료	3
Ch 44. 목재·목탄	41
Ch 48. 지와 판지	108
Ch 49. 서적·신문·인쇄물	10
Ch 52. 면·면사 면직물	2
총합계	214

자료: 중·뉴질랜드 FTA 협정문 Annex 1을 참고로 필자 정리.

■ 뉴질랜드는 현재 독자적인 일방적 관세삭감 계획(unilateral programme of tariff cuts)을 2009년 7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동 기간동안 중·뉴질랜드 FTA에서의 민감품목의 관세삭감은 일방적 관세삭감 프로그램에서의 관세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였음.

**다. 원산지 규정<sup>3)</sup>**

■ 중·뉴질랜드 FTA 원산지규정은 중국이 체결한 이전 FTA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 중 하나임.

- 이전에 중국이 체결한 ASEAN, 칠레, 파키스탄과의 FTA에서는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sup>4)</sup> 이용함.
- 중·호주 및 중·뉴질랜드 FTA 협상일지에 따르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기존의 부가가치방식을 고수한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번변경기준의 혼합사용을 주장하여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난항을 겪어 오다가 중국이 2007년 말부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부가가치 기준과 함께 세번변경기준을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으로 이용하기로 함.
- FTA 협상경험이 부족했던 초기에는 실제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중국이 협상경험 축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입장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임.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혼합한 혼합기준, 그리고 이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선택기준이 품목별로 다양하게 이용됨.

- 주로 세번변경기준이 주요 판별수단으로 이용되며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받는 품목은 전체의 약 4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보충적 원산지기준으로 최소허용기준은 FOB의 10%까지 허용하는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개성공단 제품 인정문제로 인해 관심대상이 되는 역외가공 허용조항은 포함되지 않음.

3)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어느 정도 공정을 수행해야 협정의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함. 일반적으로 양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 또는 제3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됨. 후자의 경우 HS코드 변환을 기준으로 하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riterion)과 특정 제품의 전체가치 중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에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부가가치기준(Value-added Criterion)이 있음.

4) 중·칠레 FTA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라. 서비스 분야**

■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실시하였고, FTA 서비스 부문 개방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임.

- 중·ASEAN FTA에서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은 GATS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도 기존의 GATS 양허안에서 크게 나아가는 개방을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협정 발효 후 3년 이후 시점에서 아무 때나 개방일정을 개정하거나 취소(withdraw)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정책의 융통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함.

■ 그러나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최혜국대우(Reciprocal MFN provision)'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중국의 기체결 FTA와는 매우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현재 ASEAN 및 칠레와 서비스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들 국가와는 MFN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 MFN 조항의 의미는 향후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중·뉴질랜드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할 경우 이러한 조건이 뉴질랜드에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중국이 뉴질랜드에 대한 MFN 의무를 가지는 서비스 부문은 아래와 같음.

- 건축: 건물건축, 조립식 건축물의 조립 및 건설, 설치공사 및 건물 완공과 마무리 공사
- 환경서비스
- 농업업 관련 서비스(단, 중국이 OECD 국가와 체결하는 FTA 협정의 경우에만 적용됨)
- 엔지니어링 서비스
-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여행서비스

■ 중·뉴질랜드 FTA의 중국 내 서비스시장 개방면에서 중국의 WTO 양허안보다 개방 수위가 높은 분야는 다음과 같음.<sup>5)</sup>

- 컴퓨터 관련 서비스
-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 교육
- 환경서비스
- 스포츠 및 레저 서비스
- 항공운송 서비스
- 육상운송 서비스

■ 한편 정부의 서비스 규제권한의 중요성과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원의 중요성 인식 규정을 삽입하여 정부의 서비스 규제자로서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국가의 정책목적과 지방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과 양국 서비스 규제의 발전정도에 관한 불균형적 요소를 인식해야 할 것을 명시함.

**마. 투자**

■ 투자보호는 설립 이후만 내국민대우(NT)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투자자유화가 아닌 투자보장협정 수준으로 합의함.

■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sup>6)</sup>의 경우 내국민대우만 적용되지 않는 조치를 비합치조치로 분류함.

- 특정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상 특정 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 비합치조치가 개선될 경우 자동적으로 상대국에게 적용한다는 '레치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을 도입하였음.

■ 투자 최혜국대우(MFN) 명시

- 서비스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투자부문에서도 최혜국대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어업과 해운에 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음.

■ 국가간 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투자분쟁이 협의·협상을 통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국제 투자분쟁 중재센터(ICSID)나 국제연합 국제통상법 위원회(UNCITRAL)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 국내법에 따라 국내판정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규정하였고, 국내법정 제출 이후 국제중재 신청이 가능하며, 국제중재를

6) 비합치조치란 FTA와 합치되지 않는 기존의 법과 규정에서의 조치를 뜻함.

5)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발표 자료에서 인용.

신청하려면 국내법원의 소송을 우선 취소해야 함.

- 징벌적 배상은 인정하지 않음.

**바. 인력이동**

■ 인력이동은 중국이 체결한 기존 FTA에서는 없었던 매우 새로운 시도였으며, 이 부분에서도 중국은 뉴질랜드로부터 많은 양허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GATS 양허안에서 최대 90일까지 허용했던 기업인 방문기간을 뉴질랜드 기업인에 대하여 최대 6개월까지 허가하고, 감독 혹은 임원이나 전문인력으로서 기업 내 전근자(Intra-corporate transferees)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혹은 3년간의 근로허가(work permit)를 부여하는 데 합의함.
- 뉴질랜드가 mode 1-3 서비스 양허를 한 분야(교육, 환경, 컴퓨터, 사진, 복제와 건축 서비스)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된 중국인 임원 혹은 감독은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3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한편 뉴질랜드는 [표 5]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야의 중국인 숙련인력이 임시고용을 위해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되, 특정한 자격조건과 경험을 갖춘 자에 한하도록 함.

표 5. 인력이동에 대한 뉴질랜드 양허(Temporary Employment)

직업	수용 인원
한의사 및 간호사	최대 200명 (총 인원 기준)
중국요리 요리사	최대 200명 (총 인원 기준)
중국어 강사	최대 150명 (총 인원 기준)
우슈 강사	최대 150명 (총 인원 기준)
투어 가이드	최대 100명 (총 인원 기준)

자료: China-NZ FTA, Annex 11.

- 또한 뉴질랜드는 자국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서 중국 숙련 노동력 임시고용을 양허함.
- 최대 1,000명의 중국 인력에 대하여 3년간 임시고용이 허가되며, 각 직업에 대해 100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함.
- 컴퓨터 응용엔지니어, 고급 테스트 분석가, 건축 엔지니어, 수의사, 간호사, 용접공, 대학 이상 강사, 영유아 교사, 설계 엔지니어, 회계사, 전자기술자, 방사선치료사, 배관공, 디젤기계공, 자동차 기술자 등의 분야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 또한 매년 중국인 최대 1,000명에 대하여 1년간의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함.

**사. 지식재산권(IPR)**

■ 중·뉴질랜드 FTA 지식재산권 부분은 지재권 관련 양자간 협력과 협의를 강화하며, TRIPs를 준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등 선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양국은 지재권 관련이슈들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상대국에게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할 경우, 당사국은 중·뉴질랜드 FTA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

**아. 전기전자설비 상호인증협약(EAEMRA)**

■ 전기전자 설비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증협약(MRA)는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에 대해 뉴질랜드 국내에서 합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이로써 중국이 승인한 뉴질랜드 기관에 의해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를 받으면 CCC 마크를 붙여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됨.
- 동 FTA에서의 MRA는 중국이 맺은 최초의 기술상호인증협약으로서 앞으로 중국은 국외에서 테스트·검사되어 인증받은 결과를 처음으로 수용하게 되었음.

**4. 결론 및 시사점**

■ 전반적으로 상품분야의 양허안은 중국이 뉴질랜드의 발전정도를 고려한 비대칭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양국간 비슷한 수준의 양허 기간과 양허수준을 설정하였던 중·칠레나 중·파키스탄 FTA와는 달리,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중국측만 양허 제외품목을 설정하였고 자국의 민감 품목인 축산물과 모직제품에 대하여 약 3년의 더 긴 유예기간을 얻어냈음.

- 또한 중국은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나 중간심사를 통한 관세삭감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상품협상에서 중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보함.

■ 서비스와 투자, 원산지규정을 비롯한 협정 주용 내용에서도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한걸음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FTA를 구상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원산지규정의 경우 한국은 기체결 FTA에서 세번변경을 위주로 하는 혼합기준을 선호하고 있어서, 중·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이 세번변경기준을 수용한 것은 향후 한중 FTA 원산지규정 논의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 분야에서의 MFN 인정은 한·미, 한·EU FTA에서도 협상의 쟁점이 되었으며, 두 FTA에서 모두 중·뉴질랜드 FTA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은 인정하지 않고 미래 적용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한바, 한·중 FTA 협상시에도 동 쟁점에서 큰 이견 없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중·뉴질랜드 FTA의 지식재산권(IPR) 조항은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 최초로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구체성이 없으며,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있어서는 매우 미진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 또한 중국은 동 FTA에서 최초로 전기전자설비의 기술상호인정(EAEMRA)에 합의하였으며, 한·중 FTA 협상에서도 양자간 상호인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관련 품목의 대중 수출기업들의 기술인증과 관련한 비용절감과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중·뉴질랜드 FTA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한국의 뉴질랜드 수출은 관세 차이로 인한 수출 감소가 예상됨.

- 뉴질랜드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들은 주로 낙농제품과 목재 등 1차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한국과 경합하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고, 뉴질랜드의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뉴질랜드 상품의 폭발적인 대중국 시장점유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뉴질랜드 수입시장에서 높은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관세인하에 따른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짐.

◦ 특히 자동차, 자동차용 축전지, 타이어 등 한국의 대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에서 10%의 관세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6. 중·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한·중 품목간 관세격차

구 분	주요 해당품목
10% 격차	자동차, 자동차용 축전지(배터리), 고무 타이어(자가용)
5% 격차	건설기계(불도저 등), 작업용 트럭, 작업용 기계, 알루미늄 제품, 고무 타이어(버스용),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전기제품의 부품, 자동차부품, 파스타, 커피제품, 신문용지, 선반 등 공작기계,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고급전자제품 등
격차 발생 없음	석유제품, 컬러TV, 휴대폰, 컴퓨터, 전자레인지, 수산물, 섬유제품, 기초소재, 생활용품 등

자료: 김한성 외(2007), 『한·뉴질랜드 경제협력 방향과 통상전략』.

■ 마지막으로 중국이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 협정문이 다른 선진국들과의 FTA에서도 교과서와 같은 매뉴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함.

- 다소 교착상태에 빠지기는 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중·호주 FTA는 중·뉴질랜드 FTA 타결로 인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호주 FTA가 타결된다면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KIEP